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3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차지호・이기헌・황명선

권칠승 · 김준혁 · 정준호

신정훈 · 임오경 · 염태영

임광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 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 중 인도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4조).

법률 제 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
|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 |
|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 | |
| 라의 <u>국제적 경제적 위상</u> 을 |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
|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 | |
| 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 | |
| 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 |
| 수행하여야 한다. | |